

굿모닝 블랑카!



글 · 손 계룡

국회의원 양승조 보좌관
변호사

며칠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선배와 청국장으로 점심을 함께했다. 선배는 최근에 공감(공익변호사 모임)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었는데 신선하고 좋아 보여서 점심을 한번 산 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에게 참 좋은 일은 하시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나는 단호하게 그분들이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면 사회가 더 빨리 발전할텐데 라고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신다.

2006. 10. 의원님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이크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틀림없이 국민연금 국정감사 내용에 대한 점검일 것이다. 다른 의원실도 사정은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님이 회의를 소집하시면 모든 보좌진들은 긴장하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왜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반환문제에 대한 질의가 빠졌느냐고 하신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반환문제라 함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고 월급의 9%(본인부담 4.5% + 사업자 부담 4.5%)를 국민연금으로 내면서도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2~3년의 임시 취업자이기 때문에 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 여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02조의2 규정의 상호주의 또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의

하여 결정된다. 즉 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도를 가지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납부한 연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다.

의원님께서는 영세사업장에서 1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문제에 대해 상호주의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시다.

의원님께서는 국회에 등원하시기 전부터 이 문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고, 국회 등원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006. 6.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후 첫 업무보고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질의하신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와 고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낸 연금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장관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한다.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장관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나는 일요일임에도 의원님의 긴급지시로 보건복지부에 자료요구를 하고 국정감사 질의서를 작성한다. 질의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다. 문제는 언론에서 받아서 써주느냐다. 이 문제를 누가 써줄까? 언론에 뜨면 그만큼 이슈화가 용이하다.

이 보도자료는 다음날 아침 2006. 10. 31.자 한겨레신문 사회면 머리기사로 크게 났다. 이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사설까지 함께 실렸다. 한마디로 대박이다. 이후에 안 일이지만 단순히 보면 국익에 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신문사 내에서 생겨 기사화 여부를 놓고 전날 밤에 치열한 토론이었다고 한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그 후속조치로 2006. 12. 12. 국민연금을 낸 외국인 노동자 중 중국·몽골 등에서 온 산업연수, 고용허가 자격의 노동자 92,072명에 대하여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이 낸 901억원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은 2007. 2. 6.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문제는 법안심사 소위 통과다. 여·야 의원님들은 보통분들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안은 계속 소위원회 캐비넷에 잠자고 있어야 한다. 다음날 소위 위원들은 일부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후 다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하기로 구두 합의하신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만 가면 2월 말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2007. 2. 21. 우리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기로 한 날이다. 내 전화기가 울리며 의원님은 오늘 소위 상황을 물으신다. 나는 다른 업무도 아직 체크를 못했다. 양복 상의를 걸치고 나는 바로 소위원장으로 향한다. 앗… 소위 안전에 우리 법안이 빠져있다. 이전 법안심사때 오늘 처리하기로 의원님들 간에 합의를 해놓은 건데 어떻게 된 일이지? 국민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우리 법안심사를 미뤄달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비상이다. 회의 진행중인 강기정 소위 위원장님께 급히 메모를 넣어드려 가까스로 안전으로 상정시키고, 소위에서 법안을 수정의결한다. 휴…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은 애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꼬박꼬박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엇나간다.

2007. 3. 2. 법사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간에 합의 된다면 우리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미뤄도 좋다는 약속을 하고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7. 4. 19. 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5. 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 11.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다. 법안 통과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의원님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원님도 오랫동안 공들인 문제가 해결되어 매우 기뻐하신다.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 보좌관인 나도 좋다. **KHA**